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내 마포구 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97년 2월 18일부터 4월 17일 까지 60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마포구 보건소로 하며 조사범위는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비 내역과 기타 신축공사와 관련한 부조리 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7년 2월 18일부터 조사 관계자료를 수합한 후, 본 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금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4월 1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를 종결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東暉 蔡在善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行政事務調查特別委員會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같이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열파 성을 다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 변동이 조석간 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第44回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臨時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10時 36分 散會)

○出席議員(32人)

金 東 晉	平 田 廉	應 凤
金 星 煥	李 善 天	揆 摨
金 順 錦	襄 相 英	植 植
韓 賢 懿	鍾 大 載	昶 祥
朴 映 吉	鄭 聖 爾	煥 暢
朴 東 七	李 宗 一	烈 南
韓 大 運	鄭 晚 植	珠 烈
蔡 在 善	金 昌 朴	煥 相
李 震 枝	金 孝 忠	忠 淡
庾 東 均	金 裕 仁	求 奎
韓 守 均	權 五 範	尹 明

○出席公務員

區 廳 長	盧 承 煥
副 區 廳 長	金 賢 鍾
保 健 所 長	金 永 浩
企 劃 室 長	梁 石 龍
總 務 局 長	文 忠 實
事 務 局 長	尹 炳 汝
財 務 局 長	文 煉 昇
市 民 局 長	李 春 基
都 市 整 備 局 長	廉 乙 烈
建 設 局 長	申 東 文

(參照)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2
-------	-----

제안년월일 : 1997.2.18.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난 '96.12.1. 일자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의 기획·조정 등 총괄 조정기구인 기획실이 신설 운영되고 있는 바, 동 조례 중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기획실 고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안 제3조 제2항제2호 가목)

나.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중 불필요한 내용 삭제(안 제3조제2항제2호 다목~마목)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 제15조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1996.12.1)제2조 및 제3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해당없음

첨부 :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다”목 내지 “마”목을 삭제하고, “가”목을 “나”목으로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획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②(생략) 1.~2.(생략)</p> <p>(신설)</p> <p>가.~나.(생략)</p> <p>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라.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마. 시민봉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②(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p> <p>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다.(현행 가.~나.와 같음)</p> <p>다. (삭제)</p> <p>라. (삭제)</p> <p>마. (삭제)</p>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163
번호	

제안년월일 : 1997.01..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의 결정을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됨에도 산정절차등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법성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개별 토지가격합동 조사지침이 폐지(96.10.07)되고, 동 지침으로 규정하였던 내용중 필요한 사항들은 상위 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

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 “20인이내”를 “10인이상 15인이내”로하고, 위원장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함(안 제2조)

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함(안 제4조의 2)

다. 동지가심의회가 폐지됨

3. 개정근거법령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1996.6.29 대통령령 제15093호)제14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여부 : 해당없음

딸로붙임 :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중